

1996. 12. 7.

1996年度 第3回 追加更正 歳入・歳出 豫算案
檢 討 報 告 書

기획총무위원회 소관

報告者：專門委員 朴 鍾 根

1996年度 第3回 追加更正 歳入・歳出 豫算案

■ 歳入豫算

-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83,458,930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83,761,392천원보다 302,462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,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△ 감
일 반 회 계	67,478,561	67,594,380	△ 115,819
특 별 회 계	15,980,369	16,167,012	△ 186,643

○ 재원구성

- 일반회계 (67,478,561 천원)

○ 지방세 수입	_____	11,400,426 천원 (91,726천원)
○ 세 외 수 입	_____	15,147,201 천원 (△179,371천원)
○ 조정 교부금	_____	21,638,860 천원 (△499,140천원)
○ 보 조 금	_____	18,142,074 천원 (470,966천원)
○ 지 방 채	_____	1,150,000 천원 (0천원)

- 특별회계 (15,980,369 천원)

○ 사 업 수 입	_____	4,838,417 천원 (0천원)
○ 사업외 수입	_____	8,295,687 천원 (9,713천원)
○ 보 조 금	_____	2,846,265 천원 (△196,356천원)

■ 歳出豫算

○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83,458,930천원이며 일반회계 67,478,561천원, 특별회계 15,980,369천원으로 302,462천원이 감액 조정 되었으며,

○ 그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에만 29,287,04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,615,682천원보다 328,640천원이 감액 조정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.

- 항별 세출예산안 내역 (일반회계)

(단위 : 천원)

항 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△ 감	실 · 과 · 소별
합 계	29,287,042	29,615,682	△328,640	10
기 획 관 리	8,775,021	8,623,021	152,000	기 획 감 사 실
기 획 관 리	23,500	13,500	10,000	문 화 홍 보 실
기 획 관 리	846,355	859,355	△ 13,000	구정발전담당관실
내 무 행 정	3,564,254	3,854,652	△290,398	총 무 과
재 무 행 정	4,663,581	4,499,937	163,644	회 계 과
재 무 행 정	287,610	288,034	△ 424	지 방 세 과
내 무 행 정	70,090	68,780	1,310	구 민 과
민방위 관리	32,889	60,029	△ 27,140	"
민방위 관리	347,239	347,239	0	민방위재난관리과
보 건	2,512,677	2,562,309	△ 49,632	보 건 소
내 무 행 정	6,548,484	6,823,484	△275,000	동

- 실·과·소별 예산안 내역

(단위 : 천원)

실·과·소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△ 감	비 고
합 계	29,287,042	29,615,682	△328,640	
기획 감사실	9,607,880	9,455,880	152,000	
문화 홍보실	634,439	624,439	10,000	
구정발전담당관실	938,496	951,496	△ 13,000	
총 무 과	3,597,759	3,888,157	△290,398	
회 계 과	4,707,333	4,543,689	163,644	
지 방 세 과	287,610	288,034	△ 424	
구 민 과	105,125	130,955	△ 25,830	
민방위재난관리과	347,239	347,239	0	
보 건 소	2,512,677	2,562,309	△ 49,632	
동	6,548,484	6,823,484	△275,000	

■ 檢討意見

○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

- 199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결산 전망을 예측 인건비, 기준경비, 경상비 등 불요불급성의 경비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등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 되었으며,
-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은 양 1동사무소 신축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분과 구민종합복지회관 중도금, 구정홍보 카렌다제작, 서구청 안내표지판 등이며 사업을 결산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 이므로 타당성을 고려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